씨스토리와 함께라면
저작권 보호,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저작권
#할수있어요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1602)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Tel 1588-0190 Fax 02-3153-2779 www.kcopa.or.kr

ISSN 2234-5434

C STORY 2022. 10. Vol. 34

C STORY
저작권보호전문지

Vol.34
2022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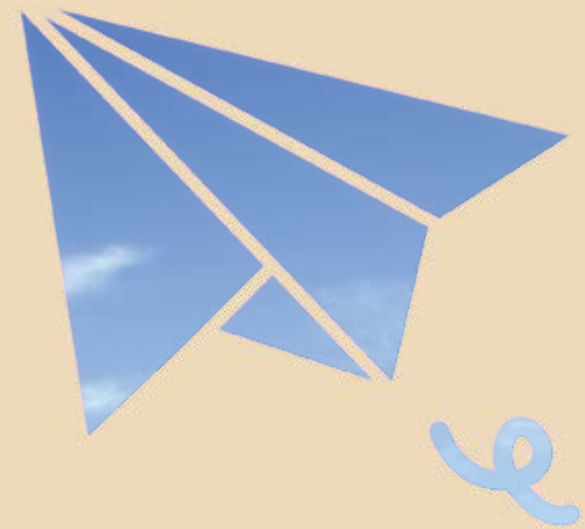

줌 인 포커스
데이터 경제 시대 속 웹 크롤링의 역할과 법적 검토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영상저작물과 보상권

저작권 시야 넓히기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책 DRM 표준화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비상하다
세계로 날아오르는 K-콘텐츠
콘텐츠의 힘, '저작권'을 보호하라!

존경하는 C STORY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입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를 무대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 문화 강국을 실로 체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소프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는 저작권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가치를 견고히 하는 저작권,
그리고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창작자의 치열하고 세련된 열정의 결과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저작권 보호의 국내외 현안에 촉각을 세우며
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는 해를 거듭하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최신 동향을 발 빠르게 전하고 관련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하는
C STORY의 소명의식을 각골명심(刻骨銘心)하여, 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독일의 문호 마르틴 발저는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이 모여
창작물에 대한 존중 의식과 올바른 이용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작권 보호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저작권을 지켜 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

Contents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

통권	34호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인	박정렬
발행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4, 9, 10층
기획·제작	교육홍보부(편집부)
디자인·인쇄	달 콘텐츠 제작소(041-414-9601)
등록번호	마포 마-00057
TEL	1588-0190
FAX	02-3153-2779
구독신청 및 문의	교육홍보부 이은지 주임 (02-3153-2476)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행한 〈C STORY〉 저작물은 공공누리 이용허락유형 중 제3유형으로, 출처 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금하며 사진과 일러스트 또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2에 의거**하여 국내외 저작권 보호기반 조성 및 저작권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체계적,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 STORY는 저작권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는 저작권 보호

| 줌 인 포커스 | 08

데이터 경제 시대 속 웹 크롤링의 역할과 법적 검토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 당신의 선택은? 구독자 TALK TALK! | 12

다음 중 영화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 저작권법으로 세상 읽기 | 16

영상저작물과 보상권

글. 전수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법학박사

| #바로야알려줘 | 20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저작권 보호 일반상식 소개

글. 김태일 /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우리 곁의 저작권

| C STORY가 만난 사람 | 22

① 뮤지컬 산업의 중심에서 저작권 보호를 외치다!

인터뷰. 신춘수 /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회장

② 솔직하게 혹은 대담하게 팩트와 임팩트를 넘나드는 글사위

인터뷰. 손화신 / 기자, 에세이스트

| 이야기로 보는 시정권고 사례 | 30

뮤지컬의 '밀캠' 파일을 판매 및 교환하는 블로그 게시물

글. 오진해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 저작권 시야 넓히기 | 32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책 DRM 표준화

글. 김태현 / ㈜디알엠인사이드 전무

| 저작권법 변천사 | 36

1986년 저작권법 : 저작권위탁관리업

글. 이호흥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 | 40

제13화 눈물이 난다!

글·그림. 이우영 작가

| 생생 저작권 보호현장 | 42

① 미술저작권 저작권 보호 교육 및 공동 세미나

② 불법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 개최

③ 한국-필리핀 국제공조 세미나

④ 광주 ACE Fair에서 저작권 보호 홍보·컨설팅 진행

| KCOPA News | 44

9 ~ 10월 저작권 보호 관련 소식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데이터 경제 시대 속 웹 크롤링의 역할과 법적 검토

웹 크롤링은 '가치중립적 기술'

4차산업혁명 및 초연결시대가 도래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데이터 기반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수집·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때 데이터 경제 시대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 "크롤링(crawling) 또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다. 웹 크롤링은 크롤러라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이를 별도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1] 크롤링은 웹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므로 검색 기반의 웹 서비스나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그 형태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셋 구축, 가격비교 사이트나 이미지 공유 서비스와 같이 웹 크롤링 기반의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크롤링은 다양한 유용성을 가지는 기술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려면 인적·물적 투자가 요구되고 그 투자의 결과물을 경쟁업체가 크롤링으로 대량 복제하여 활용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웹 크롤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2] 그러나 '크롤링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 기술'로서[3] 그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견제할 필요가 있다.[4]

적극적·불법적인 웹 크롤링 방식이 문제

국내외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웹 크롤링 유형을 보면, ①크롤링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행위,[5] ②VPN을 통한 IP우회행위,[6] ③로봇 배제 표준(robots exclusion standard)[7] 무시행위, ④정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용 접근 권한을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일정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8] ⑤경쟁 관계에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상당 분량의 데이터베이스 복제 및 사용행위[9] 등과 같이 비정상적 경로로 지속적으로 우회접근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크롤링 방식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는 해킹 방지를 위한 「컴퓨터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침해, 수집된 자료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상 기술적

1) 크롤링은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URL에 접근하여 HTML 코드상의 태그를 따라가며 웹페이지를 수집, 인덱싱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2) 전자신문, "[스페셜리포트] 플랫폼 업계, 크롤링 법적 분쟁 앓이", 2022.4.7.
3) 중국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크롤링의 기술 중립성을 인정하고, 온라인상 크롤링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다. 백지연, "[중국] 법원, 쇼트 클립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크롤링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례를 발표함", 저작권 동향 2022 제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6.3. 우리 법원도 크롤링은 정보 자원 등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으로, 크롤링 해당 여부에 따라 권리침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9.8. 선고 2021고단588 판결.
4) 권세진·이정훈·이창무, "데이터 경제 시대에 있어서 웹 크롤링(crawling)의 법적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3호 통권 제22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1.
5) Craigslist,inc. v. RadPad, Inc., CV. 16-01856(N.D.Cal. Apr. 13, 2017), Facebook, Inc. v. Power Ventures, Inc., 844 F.3d 1058(9th Cir. 2016).
6) eBay v. Bidder's Edge, 100 F. Supp. 2d 1058 (N.D. Cal. 2000).
7) 로봇배제 표준이란 구글 등 검색로봇이 정보 수집을 위해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검색로봇에 의한 웹 사이트의 디렉터리 및 파일들에 대한 검색 조건을 명시해 놓은 국제 규약이다. 정상적인 검색로봇은 사이트 방문 시 가장 먼저 웹사이트의 로봇배제 표준파일(robots.txt)을 확인하고 파일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수집한다.
8) Van Buren v. United States, 593 US _ (2021),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8가합528464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8 선고 2018가합524486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16565판결.

글. 권세진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보호조치 우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는 판단과[10] 더불어 웹 크롤링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무력화하는 불법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최근 형법에 신설된 컴퓨터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도구 침해죄[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12] 한편, 미국의 경우 법원은 크롤링 방지를 위해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일반적 조치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 효과적 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13] 최근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권한의 부여와 그로 인한 정보 독점의 우려를 표하면서 암호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된 데이터의 웹 크롤링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4] 따라서 암호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된 데이터를 웹 크롤링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크롤링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사이트 접속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자체 구현된 기술적 조치이거나 사이트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 설정과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 통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크롤링 관련 법적 분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 행위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제기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더불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산업법")의 제정과[15]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보호 조항'의 신설로 웹 크롤링 기술의 활용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숙박업소 정보제공 경쟁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웹 크롤링 행위에 관해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6] 우선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해, ①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하고, ②위 정보들은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는 없으며, ③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관해, ①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 URL이나 명령 구문은 누구라도 통상적인 '패킷 캡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며, API 서버로의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없었고, ②피해자 회사의 이용 약관상 제한은 피고인들과 같은 비회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규정 내용도 접근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피해자 회사가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미국 법원이 암호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된 데이터 또는 차단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웹 크롤링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유사한 사정과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웹 크롤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레고 블록'과 같은 데이터는 홀로 존재할 때보다 무수한 다른 레고 블록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17] 그리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웹 크롤링은 필수적인 기술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정한 웹 크롤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웹 크롤링의 요건과 절차, 로봇배제표준과 웹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한 해석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지침 등을 제공하면 웹 크롤링 기술의 긍정적 역할의 확산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웹 크롤링 기술 이용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0) DS AVOCATS, "Web Crawlers' Data War," DS Newsletter, 2021.5.17.

11) 중국 형법 제285조에 신설된 규정으로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혹은 타인이 전산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위법행위를 알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Sina, "爬虫"软件违规获取企业信息 9人因侵犯公民个人信息罪获刑", 2022.8.17.

13) 법원은 원고는 웹사이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스크랩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했으나, 미국 국내외 서버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스크랩 행위가 지속적으로 가능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효과적 통제로 볼 수 없으므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uponcabin LLC v. Savings.com, Inc., 2016 WL 3181826 (N.D. Ind. June 8, 2016).

14) 비밀번호 없이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웹사이트의 접근 권한을 암묵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크롤링을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iQ Labs, Inc. v. LinkedIn Corp., 938 F.3d 985 (9th Cir. 2019). 최근 제9연방항소법원은 대법원이 'Van Buren 판결'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파기했던 제9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hiQ Labs v. LinkedIn Corp., 31 F.4th 1180 (9th Cir. 2022). 이 외에도 Field v. Google, Inc., 412 F.Supp. 2d 1106 (D. Nev. 2006).

15) '데이터 산업법'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자산의 보호와 그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17) 손승우·이정훈, "Nature of Data Assets and Their Prote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Analysis",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1.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다음 중 영화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영화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드는 창작물이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감독, 작가, 배우, 제작사 등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영화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저작권법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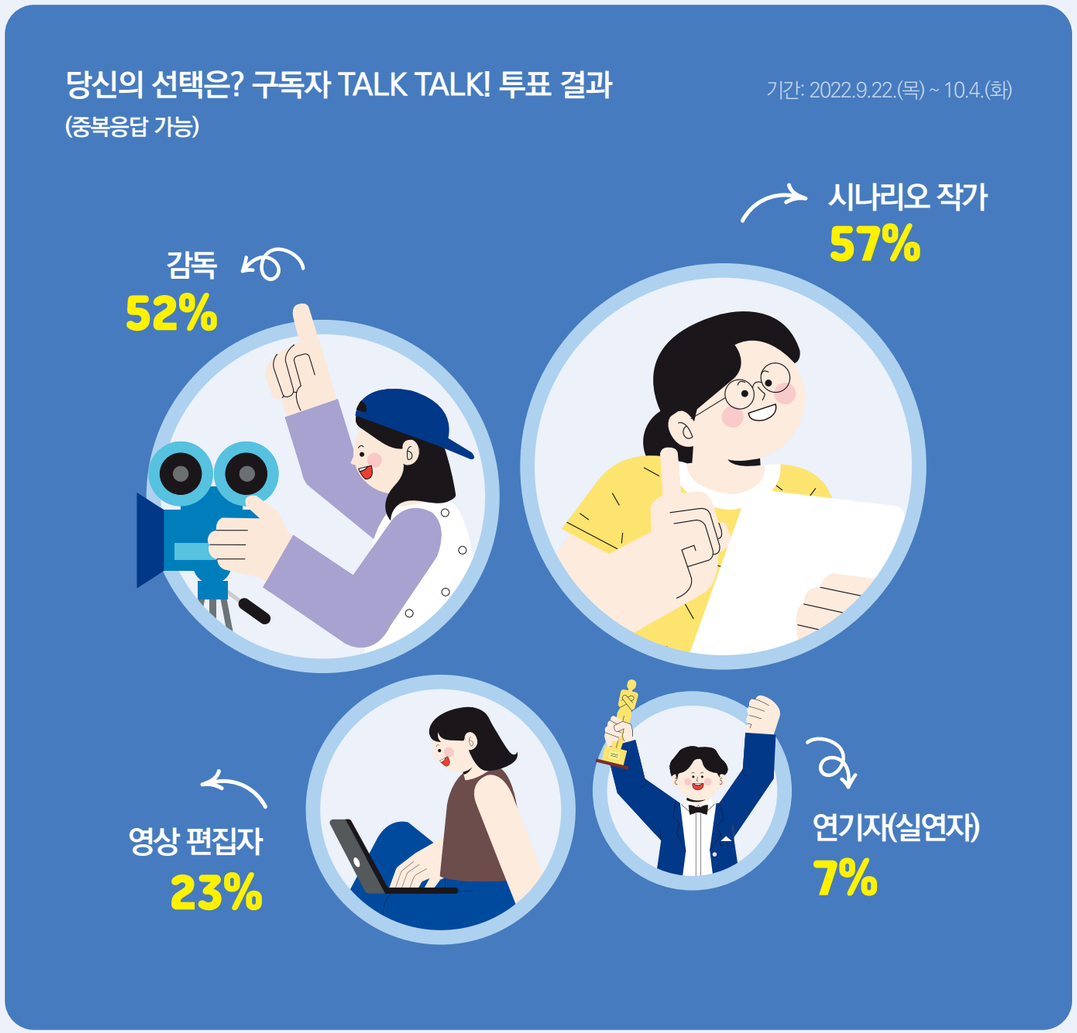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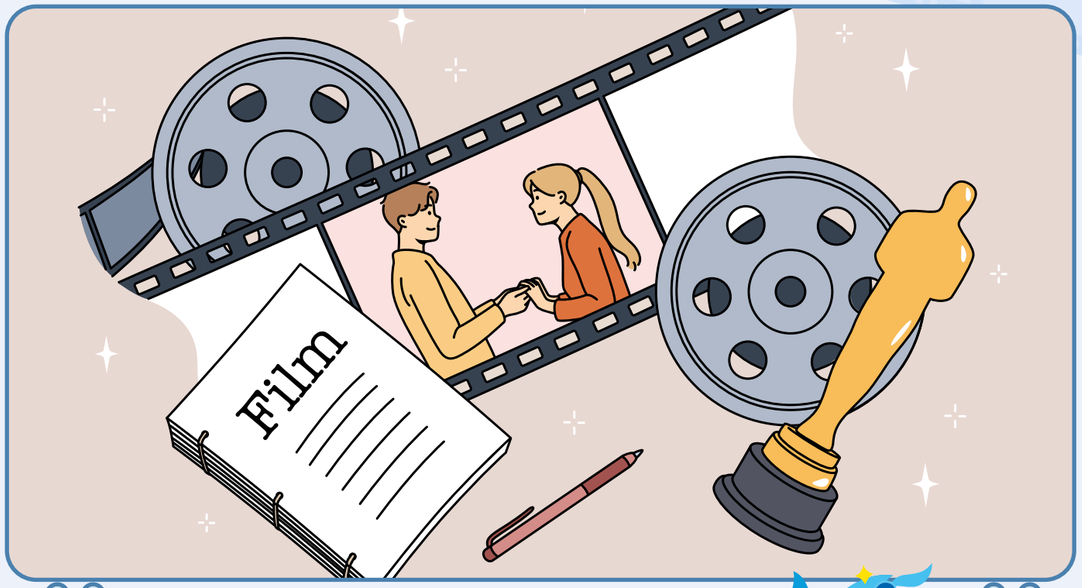

알려드릴게요!

내용 설명에 앞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분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는 특징이 있죠(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즉,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반면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만약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은 가지고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저작물은 어떨까요? 영상저작물(영화)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제작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관여하게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상저작물에 있어서는 저작권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영상제작자로서는 일일이 공동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놓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1] 즉, 이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영상저작물(영화)의 유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글.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홍보부

저작자를 일일이 구분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 법에 의거하여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여 투자를 통해 제작된 영화를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는 '고전적 저작자(Classical Author), 근대적(혹은 현대적) 저작자(Modern Author) 및 실연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 외에도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상제작자는 스스로가 영상저작물 제작에 직접 참여 또는 깊숙이 관여하면서 저작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고용된 자의 업무상 저작에 의해 저작자의 지위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2]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영상제작자와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영상저작물(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독

근대적(현대적)저작자에 대한 학계의 통설은 영상콘텐츠 그 자체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인 감독, 연출, 촬영, 미술, 음악 등의 독립적 분야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총감독, 프로듀서,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악감독 등으로 호칭되는 자를 일컫습니다.[3] 근대적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지위를 갖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근대적 저작자의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4] 비록 특약 등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상물 저작자(감독)의 저작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만, 최근 영상저작물의 근대적(현대적) 저작자의 저작자성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감독, 작가 등 영상물을 직접 '창작'하는 창작자들에게도 기본 계약금(노동금) 외, 최초 저작자로서 창작물의 수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5]도 있는 실정입니다.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 작가는 고전적 저작자에 해당합니다. 고전적 저작자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있어 줄거리의 소재로 사용되는 어문저작물이나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기존의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영상저작물 소재를 창작한 소설가, 만화가, 작사가, 작곡가, 화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6]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 각본, 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앞서 얘기했던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인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지위에는 있지 못하나 해당 영상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저작권자 지위에 있다[7]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기자 (실연자)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영상저작물에서는 배우가 실연자에 해당합니다. 배우가 연기만 하지 않고 연기를 하면서 스토리의 줄거리를 구성함에 있어 창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라면, 배우는 실연자의 지위와 근대적 저작자(감독 등)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으며,[8]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자

영상 편집자는 일반적으로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녹음 등과 같이 영상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근대적 저작자(현대적 저작자)를 의미하므로, 앞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9] 서울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1가합40881 판결에서도 "영상저작물의 경우 그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 즉 시나리오 작가, 감독, 프로듀서, 미술감독, 촬영감독 등 독립한 분야의 감독, 필름편집자 등이 공동저작자라고 해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가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고 영상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나 실연자가 누구인가는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10] K-영화, K-드라마 등 우리의 영상저작물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영상의 제작 및 유통 환경이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저작권법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흥구, "영상저작물에서 저작자의 분류와 의미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40호, 2018.6., 164면.
2) 전흥구, 위의 논문 165면.
3) 송영식 · 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제8판, 세창출판사, 2012., 366면.
4) 전흥구, 앞의 논문, 167면.
5) jtbc 뉴스, "창작자 권리 보상법, 한국만 없다." 영화계 저작권법 발의, 2022.8.3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3082)
6) 전흥구, 앞의 논문, 166면.
7) 전흥구, 위의 논문 같은면.
8) 전흥구, 위의 논문, 167면.
9)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2011., 497면.
10) 안효질, "영상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2018., 418면.

글. 전수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법학박사

영상저작물과 보상권

최근 몇 년간은 마스크 속에 갇힌 듯 답답한 일상에서 스마트폰 하나 손에 쥐고 방구석 여행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이때 우리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 콘텐츠와 저작물을 만났다. 그리고 K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활약상을 보이는 것을 접하며 마음 한구석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콘텐츠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특히 감독이나 작가가 얻은 수입은 최초 계약으로 얻은 것에 한정되고, 글로벌 플랫폼만 거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들을 접하니 아쉬움과 의아함도 밀려왔다. 그런데 최근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여·야 양측에서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니, 법안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글. 전수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법학박사

최근 발의된 두 건의 저작권법 개정안

유정주 의원(의안번호 제2117131호)과 성일종 의원(의안번호 2117402호)은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소관위에 회부되어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여야에서 비슷한 시기에 한 목소리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된 점도 주목되고 있다. 두 법안은 영상연출자를 정의하는 내용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1]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상권을 신설(제100조의2)하고 있다. 이 보상권은 포기나 양도할 수 없고, 저작권신탁 및 대리·중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OTT와 같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출자, 각본가에게 보상권이 있음을 법에서 명시하고 그 외에 보상권을 가질 수 있는 자, 보상의 범위·형태,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하고 있는데, 보상권의 보호기간은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준용하고 있다.

해외의 영상저작자 보상제도와의 차이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은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이용계약에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저작자 및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에 관한 정보(이용방법 및 수익 포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처음 합의한 보상의 규모가 이후에 전체 수입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 계약갱신요청을 할 수 있고,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정당보상청구권과 추가보상청구권을 두고 있다. 모두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난 경우 계약 당사자에 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면서 정액으로 보상방식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해 저작자가 불공정 계약이나 수익예측 불량으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격조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2] 이번에 발의된 우리나라 법안은 이들 유럽과 독일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인 감독 등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과 보상금 청구권이 저작권자의 계약상대방이 아닌 최종제공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성일종의원 대표발의안은 '영상연출자' 라는 용어를 신설(안 제2조 제14의2호) 하였다.

2) 김혜은, "영화창작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Law & IP(제10권제2호)」, 참고. 이번 입법안은 남미의 보상제도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 발의에 대한 다른 의견

영상물 저작자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지 저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최종제공자 등에 별도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들은 이견을 내는 분위기다. 이를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시점에서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해 제작하고 있는데, 저작자의 보상권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영상제작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둘째 OTT와 같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가 콘텐츠 제작사(CP)와 정당한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추후 저작자의 주장에 의해 콘텐츠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발생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3]

마치며

해외의 우수한 제도를 참고하더라도 국가마다 법체계가 다른 만큼 우리 저작권법에 이음매 없이 끼워 넣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저작권법은 제5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하,'특례규정')은 영상저작물의 권리처리를 간소하게 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특례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보상권을 인정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저작권법을 해석·적용하고, 입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제1조가 정한 창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 그리고 문화산업의 발전의 접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방법 중 정당한 보상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반드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법 조항의 신설이 빠르고 확실한 보호의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예상치 못한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보상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와 검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4][5]

3) [김현아의 IT 세상읽기] '저작권 보상청구권' 신중해야 하는 3가지 이유(이데일리, 2022년 10월 2일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32488984

4)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제46조의4 추가보상청구권)의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 특례

5) [김현아의 IT 세상읽기] '저작권 보상청구권' 신중해야 하는 3가지 이유(이데일리, 2022년 10월 2일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31686632488984

글. 김태일 / 한국저작권보호원 법제지원부

#바로야알려줘

궁금하고 헷갈리는 저작권, 바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소통망을 통해
구독자분들이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Q1.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두는 건 괜찮은가요?

A1.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브 방송 중에 음악을 틀어두는 경우 약관 위반에 의해 제재되거나 향후 법적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서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으니 참조해 주세요.

Instagram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회원님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 또는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없으며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예: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모조품, 해적판)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출처: 인스타그램 이용약관
(help.instagram.com/581066165581870)

Q2.

유튜브 영상 내에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2.

귀하께서 유튜브를 활용해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실 경우라면 대중가요를 포함해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을 얻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을 받지 않는다면 별도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튜브 측에서 영상 내 대중가요 사용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에 포함되는 광고수익을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광고수익을 얻지 않는 조건으로 별도의 이용허락 또는 신고 없이 대중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제과점에서 유명 캐릭터를 활용하여 마카롱이나 케이크를 제작·판매할 경우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A3.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포함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 이용해야 하며, 캐릭터를 마카롱이나 케이크에 이용하는 것 또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이외 캐릭터의 상표권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캐릭터의 권리사에 문의하여 캐릭터의 종류, 이용 범위 및 방법, 조건 등을 협의하신 후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뮤지컬 산업의 중심에서 저작권 보호를 외치다!

인터뷰. 신춘수 /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회장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뮤지컬 제작사 25개로 구성된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협회)가 출범했다. 협회는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 (사)한국뮤지컬협회와 함께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뮤지컬 공연 무단 촬영 근절, 무단 촬영물의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 침해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다. 한국 뮤지컬 산업의 중심에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과 공연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신춘수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협회에 대한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협회는 지난해 출범식을 시작으로 뮤지컬 제작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에 뮤지컬 시장을 지켜보자는 마음을 모아 기부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제작사 간의 유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를 계기로 제작사들과 뜻을 모아 협회를 결성했고, 지금까지 한국의 뮤지컬 시장을 개척하고 견인해 온 25개의 제작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은 지난 20여 년 간 급격하게 양적 팽창을 이뤘지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뮤지컬 산업을 발전시킬 여력이 없었는데요.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되는 유례없던 위기를 겪으며 우리 뮤지컬 산업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절실히 갖게 됐어요. 미국 브로드웨이는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는 배우, 스태프 등 각각의 노동조합이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뮤지컬이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현시대에 걸맞는 콘텐츠 신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Q. 최근 협회의 활동과 뮤지컬 산업계의 이슈가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협회는 지난 8월에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뮤지컬은 한국의 음악, 춤, 미술 등이 응집되어 있고 글로벌 지향성이 강한 장르로서 K-콘텐츠의 대표 장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영화진흥법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산업 육성책이 뒷받침되었기에 현재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난 9월, 문화예술 범위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뮤지컬은 전체 공연예술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수천억 규모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과 육성사업의 사각지대에서 연극의 하위 단위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공연법상의 '공연'이라는 정의에 뮤지컬이 추가된 거죠. 뮤지컬은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공연예술입니다. 연극과 같이 순수예술로만 보기에는 태생이 다른 대중을 겨냥해 만든 장르인거죠. 따라서 이러한 장르의 독립은 뮤지컬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어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Q.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공연물 저작권 침해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협회 출범 후 수렴된 안건 중에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컸죠.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안무, 실연, 무대예술 등이 종합된 결합저작물이고, 최근 무대를 넘어 플랫폼이 다변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부딪히는 저작권 현안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뮤지컬 시장 내 보호 체계 및 관련 정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촬영한 영상과 음원의 수요자 또한 우리 뮤지컬 관객이기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사실 조심스러웠어요. 반면에 뮤지컬 시장이 콘텐츠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현시점에서 분명 큰 문제였기에 가벼이 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건강한 공연 관람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캠페인의 취지를 잘 살려 관객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려고 해요.

Q. 뮤지컬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허가 없이 공연을 녹음·촬영한 자료를 거래하는 밀녹·밀캠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몇 년 전 협회 회원사 중 한 제작사가 처음으로 밀녹·밀캠 거래에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었죠. 불법 거래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거래내역을 수집하고, 저작권자와 공동제작사로부터 고소위임장을 받는 등 험난한 고소 과정도 감내했으나 결과는 솜방망이식 처벌이었습니다.

제작사에 수많은 밀녹·밀캠이 접수되고 있지만 제작사에서 직접 불법복제물을 관리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며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저작물 규모를 파악한 결과 장기간 수백 건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업자 수준의 판매자가 다수 있었어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 뮤지컬도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많은 제작사가 공연 영상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물 문제는 향후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창작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뮤지컬 관객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감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Q. 뮤지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협회는 뮤지컬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저작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적정한 저작권료 요율을 산정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현재 브로드웨이에서는 프로듀서와 극장이 중심이 된 브로드웨이 리그와 배우, 작가 등의 노조가 협상을 통해 매해 변동하는 뮤지컬 생태계에 적정한 계약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작가, 작곡가, 디자이너, 배우 등 뮤지컬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문별로 대표하는 조직이 없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균형감 있는 방식으로 많은 대화와 정리가 필요하죠.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면 뮤지컬의 영상화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극장 내 촬영을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화는 무단 촬영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어 극장 내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방송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장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고, 녹화하려 한 미수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죠. 뮤지컬 또한 밀녹, 밀캠 등 무단 녹화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Q. 국내 뮤지컬 산업 진흥을 넘어, 글로벌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쟁력 있는 작품의 개발이요. 프로듀서는 동시대의 세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과 탄탄한 기획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요.

경쟁력 있는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위한 펀드레이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는 100% 펀드레이징이 완료되어야 공연을 올릴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의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70%까지 투자받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만 공연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받는 과정에서 작품의 상업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고 제작사 입장에서도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펀드를 조성해 투자·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 창작진과 프로듀서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뮤지컬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협회의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브로드웨이 리그처럼 모든 종사자가 안정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싶어요. 협회는 뮤지컬 제작사와 뮤지컬 산업 전체를 위해 합리적인 제작시스템과 표준계약서 제시, 뮤지컬 전용 펀드 마련, 브로드웨이 파트너십 등을 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관람객분들에게 저작권 보호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뮤지컬은 공연 외형상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지만,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기까지 오랫동안 다양한 요소에서 수백 명의 손을 거쳐 하나의 결합저작물 형태로 세상 밖에 나옵니다. 창·제작자, 관객들과 함께 저작권 준수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어야 창작 활동도 활성화되고 더 좋은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뮤지컬을 향한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혹은 대담하게 팩트와 임팩트를 넘나드는 글사위

인터뷰. 손화신 / 기자, 에세이스트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자 경력만 10년. 손화신 '기자'는 '작가'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정확한 팩트만을 전했지만, 몇 해 전부터 가감 없이 자신의 감정을 펼쳐 보였다. 『나를 지키는 말 88』, 『아이라는 근사한 태도로』,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총 3권의 에세이를 출간하며 기자와 에세이스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를 만났다.

Q. 기자와 에세이스트, 두 직업을 병행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글쓰기에 매너리즘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이야기를 쓰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사에 쓸 수 없었던 비유도 맘껏 쓸 수 있었죠. 기사와 에세이, 성격이 다른 두 글을 번갈아 가며 쓰니까 질리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만약 에세이만 썼다면 언젠가 할 말이 바닥날 거예요. '나'에 매몰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깥 세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쓰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아요. 제가 중심인 에세이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함께 쓰면서 균형을 맞춘 셈이죠. 종종 어떻게 두 가지 일을 하냐고, 힘들지 않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히려 기자와 에세이스트, 두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글쓰기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Q. 글을 자주 쓰셔야 할 텐데, 글쓰기 루틴이나 글감을 찾는 방법이 있나요?

글쓰기 루틴을 따로 갖고 있진 않습니다. 본업이 기자인지라 항상 글을 써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정말 밥 먹듯이, 매일 습관처럼 글을 쓰죠. 글감을 찾는 방법은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글감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기사 쓸 때는 취재할 대상이나 주제가 정해져 있어 따로 글감을 찾을 필요가 없지만 에세이는 글감 찾는 일이 시작이에요. 자신이 말하고 싶고, 다룰 수 있는 글감을 찾기 위해 항상 주변을 잘 둘러봐야 해요. 정말 잘 관찰하고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Q. 기사나 에세이 외에도 특별한 글쓰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의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 글쓰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길스토리는 각 분야 창작가들이 모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공공예술 캠페인을 펼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요. 제작한 콘텐츠 수익금으로 기부 활동도 하고, 창작가를 후원하는 공익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저는 글을 쓰는 창작가로서 길스토리의 온라인 플랫폼 'Creative Lab'에 5년간 글을 기고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길스토리 이름으로 출간한 'CUP vol.1: 개인의 취향은 어떻게 영감이 되는가' 제작에도 참여했어요. 창작의 원천인 '영감(Inspiration)'을 주제로 창작가 10인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작업물을 만들어낸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프로보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공익적 이슈를 알리고 전파하며 나아가 가난을 위로하는 문화예술을 실천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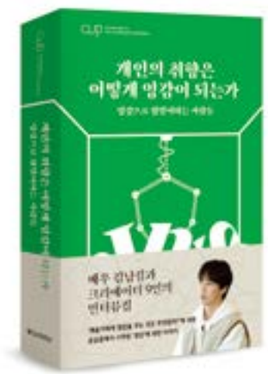

CUP vol. 1:

개인의 취향은 어떻게 영감이 되는가

『CUP』은 길스토리에서 만든 시리즈 단행본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과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간격을 좁히고 우리의 정서를 찾아 『CUP』에 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

예술을 통해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배우 김남길이 문화예술인 100여 명과 함께 설립한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 공공예술 캠페인

시리즈 『CUP』

『CUP』에 대한 정보나 이벤트, 책 속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책에는 담기지 않은 웹 전용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Q. 길스토리 프로보노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프로보노로 활동하는 창작가분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생생해요. 특히 콘텐츠 회의하느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던 때가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10명 정도 모여서 치열하게 아이디어 내고, 계획을 짜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골치 아픈 회의가 아니라, 대학교 동아리 활동처럼 설레고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Q. 다방면으로 글을 쓰시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을 가장 많이 의식하는 직업 중 하나가 기자 아닐까요? 기사에는 사진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자사에서 찍은 사진을 씁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될 때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사진을 정식으로 구매하거나 방송화면 혹은 SNS 게시물 등을 발췌하여 사용하기도 해요. 그럴 땐 출처를 정확하게 써줘야 합니다. 글을 인용할 때도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약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네요. 기사뿐 아니라 에세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보고 들은 걸 혼자 생각해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창작가의 소중한 재산이고 권리인 저작권을 훔쳐서 이익을 취하는 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해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창작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Q. 향후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계속 글 쓰면서 책을 내고 싶어요. 기사나 에세이 말고 문학에 가까운 수필도 써보고 싶네요. 제가 문학 읽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 저도 그런 한 권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글. 오진해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뮤지컬의 '밀캠' 파일을 판매 및 교환하는 블로그 게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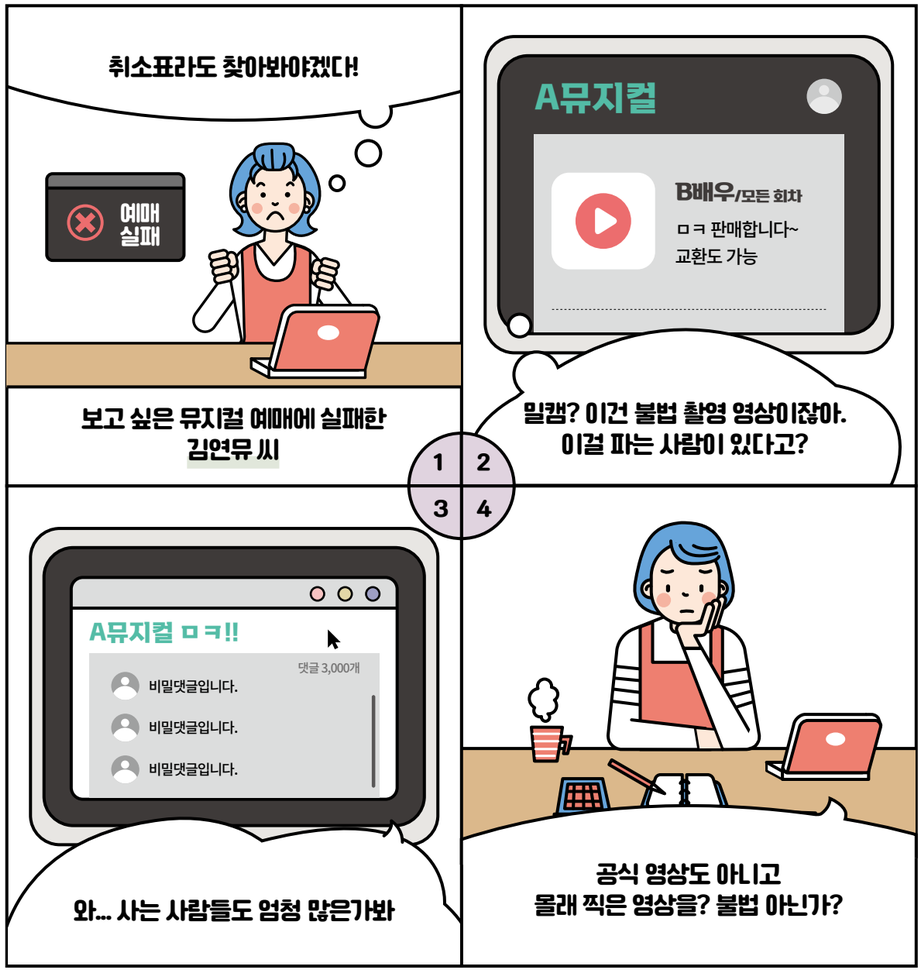

뮤지컬의 녹음 · 녹화를 저작권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영상저작물의 무단 녹화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영화 등)을 영화상영관 등에서 허락 없이 녹화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연극저작물이지 영상저작물이 아니므로,[1] 무대공연을 직접 녹화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뮤지컬을 녹화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뮤지컬 공연 전체를 극단 측의 허락 없이 녹화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복제권 및 구 저작권법상의 방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바 있습니다.[2]

최근 코로나19로 공연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밀캠' 파일의 유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무단 녹화·유출되는 사례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공연에 대해서도 영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무단 녹음·녹화와 공중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 등의 예외를 두지 않고 전면 금지·처벌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연의 목적·방법·장소 등을 불문한 모든 녹화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밀캠' 파일이 뮤지컬과 실황 영상·음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뮤지컬 애호가라면 녹음·녹화 자체만으로도 배우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등 공연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심의 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고,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아 게시물의 삭제 · 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4]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로 신속하게 차단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즉 무대공연 중인 뮤지컬은 영상저작물이 아니지만, 이를 촬영한 실황 DVD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상고기각)
3) 2020. 12. 11. 김홍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6388호)
4)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뮤지컬 공연 무단 촬영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하여 올 연말까지 '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밀녹·밀캠 거래 글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copy112.or.kr로 신고해 주세요.

글. 김태현 / ㈜디알엠인사이드 전무

국내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책 DRM 표준화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종이 도서가 디지털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되고 이용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책은 휴대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책 DRM은 전자책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허가된 사용자와 기기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이번 저작권 시야 넓히기에서는 전자책 DRM의 개발 배경부터 표준화 과정, 이점을 짚어보고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려 한다.

전자책 DRM 표준화

글. 김태현 / ㈜디알엠인사이드 전무

전자책 DRM 기술 개발 배경

전자책 DRM 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자책을 서비스할 때 반드시 전자책 DRM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표준이 없다 보니 전자책 공급업체 또는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DRM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독자적인 DRM을 사용하는 경우, 복수의 전자책 공급업체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야 하는 공공도서관 등은 어쩔 수 없이 복수의 전자책 DRM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자책 뷰어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전자도서 대여 시스템과 전자책 뷰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같은 도서관임에도 공급업체에 따라 서로 다른 DRM으로 인해 별도의 뷰어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 DRM에 대한 표준 부재는 전자책 시장의 독자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자책 제작-공급-대여(또는 서비스) 시스템-전자책 뷰어'에 걸쳐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DRM이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모두 하나의 업체에서 이를 제작·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자책 DRM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년 전 도서관 관계자를 포함한 전자책 산업 종사자 132명에게 전자책 DRM 표준의 필요성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30명의 응답자가 전자책의 이용 편의성 증대 및 도서관의 DRM 장애 관리 부담 감소를 위해 전자책 DRM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술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표준개발까지의 과정

표준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었지만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나서는 기관이나 기업이 없다 보니 그 과정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전자책 공급시장에서 표준화 이슈는 관련 기업들에게 뜨거운 이슈였다. 그 과정에서 디알엠인사이드는 2010년부터 KS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약 10년에 걸쳐 KS X 6072 표준으로 7종을 등록하였다.

초기에는 일부 기업들이 표준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표준화 과정에서 DRM 기술의 유출 위험성 때문이었다. 기존의 전자책 DRM 기술들은 기술 내용이 공개될 시 이를 악용한 해커들의 콘텐츠 유출 위험 때문에 공개가 어려웠다. 그러나 '표준 전자책 DRM 기술'은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공인된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표준 명세서에 공개하고, 내용이 공개되어도 보안상의 문제가 없어 공개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며 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었다.

전자책 DRM 기술 활용의 이점

전자책 DRM 표준 기술은 전자책을 공급하거나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적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전자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표준 기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전자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자책 DRM이 있어야 하고, 만일 이 솔루션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을 사용해야 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자책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대여시스템 및 뷰어를 구축한다 해도 전자책 공급시장에 쉽게 뛰어들기 어려웠다. 그러나 표준 기술이 만들어짐으로써 도서관에 전자책을 공급할 때 더 이상 대여시스템 및 뷰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준 전자책 DRM이 연동된 대여시스템과 뷰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S 표준의 전자책 DRM이 도서관에 도입되었을 경우의 효용성은 2021년, 국내 10개 주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KS 표준의 전자책 DRM을 보급하는 사업에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표준 기반 뷰어 설치만으로 도서관의 모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복수 개의 전자책 뷰어의 설치 및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책 공급사들은 전자책 납품과 함께 전자책 DRM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하였으나 도서관의 KS 표준 전자책 납품으로 개별적인 DRM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도서관 입장에서도 하나의 시스템에 복수의 DRM이 구동되는 복잡한 전자책 대여 시스템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 없이 경쟁력 있는 하나의 시스템만을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졌다.

전자책 DRM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

KS 전자책 DRM 기술은 이미 기술적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21년에 ISO/IEC TS 23078-3으로 등록되었고 KS 표준을 넘어 이제 ISO/IEC 23078-3 국제 표준으로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KS 표준 전자책 DRM은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10개 주요 공공도서관에 KS 전자책 DRM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22년 현재 기준 전국에 24개의 공공도서관이 KS 표준 전자책 DRM을 도입하였으나 전체 도서관 수에 비하면 그 숫자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국의 많은 도서관에서 도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기존에 전자책 공급사로부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아왔던 관행으로 인해 KS 표준 전자책 DRM 도입 예산 책정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KS 표준 DRM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0여 년의 R&D 사업을 통해 태어난 국내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이 인정된 KS 전자책 DRM이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도서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부탁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정부의 KS 표준 전자책 DRM 도입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더 많은 도서관이 표준 기반의 도서 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 이호흥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1986년 저작권법 :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개념과 도입배경

1986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하 "1986년 저작권법")에서 보인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종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던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은 1986년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흔히 운위되는 집중관리제도(system of collective administration)의 일종이다.

국제적으로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부문에서의 집중관리 일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통용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리·중개·신탁관리나 지정단체의 경우는 물론이고, 사적복제나 복사권, 대여권, 추급권 영역의 것 등과 음악출판사(music publisher)[1]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보면 국제적으로 일컬어지는 집중관리제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보다 넓은 개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중관리제도는 본시 저작권 개별관리의 곤란성에 토대를 두어 탄생되었다. 곧,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i) 권리자의 저작물 이용·관리가 용이하고, ii)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며, iii) 국제적인 이용·관리 등에 이점이 있다는 데에서 사회적 타당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2]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관리의 내용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대가의 징수와 분배·감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한 입법 배경이기도 하다.[3]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내용

1986년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탁관리업의 종류를 대리·중개·신탁의 3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둘러싸고 위탁관리 대상 권리의 범주가 논란될 수 있었으나,[4] 실제의 경우는 저작재산권과 차후에 저작인접권에 한정되어 허가제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저작권의 대리란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자가 그를 대신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과가 직접 권리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형태의 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저작권의 중개란 중개자가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알선하는 사실행위만을 행하는 형태의 관리를 의미한다. 중개의 경우는 계약체결 등을 당사자가 행한다는 점에서 대리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저작권의 신탁이란 신탁계약에 의해 권리자(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형태의 것이다.[5]

---

1) 음악출판사란 악보나 악곡을 단순히 인쇄·발행하는 출판사가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가에게 저작권을 양도받아 그 저작물을 국내외에서 이용을 촉진시키는 한편 당해 권리의 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출판사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 출판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위탁관리업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에 관한 상세는, WIPO, Collective Admistra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WIPO, 1990), pp. 5-7 참조.

3) 한편으로는 일본 저작권법의 입법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은 1939년 제정된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업무법")을 제정하였는바, 이의 규정내용이 1986년 저작권법의 규정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개업무법은 당시 외국 저작재산권자의 대리인으로서 1931년부터 1940년까지 독일의 빌헬름 프라게(Wilhelm Plrage) 박사의 강경한 권리주장과 고액인 사용료 청구에 의한 분쟁의 다발(이른바, "프라게선풍")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이 종류의 업무규제와 국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놓은 중개업무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프라게 선풍은 중개업무법의 탄생 이외에 사회적으로 일본 국민의 저작권 의식을 고양시켰으며, 프라게 박사의 표적이 되었던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출처명시를 할 경우에 음반을 방송 · 흥행에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유이용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상세는, 佐藤惠太, "著作權の集中管理のあり方," 「ジュリスト」, 第1132号(1998. 4. 15), 52面 ; 齊藤 博, 「著作權法」(有斐閣, 2000), 311面 ; 作花文雄, 「詳解著作權法」, 第2版(ぎょうせい, 2002), 780面 ; 田村善之, 「著作權法概說」(有斐閣, 1999), 457面 참조.

4) 논리상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작인격권의 경우는 일신전속의 원칙상 위탁관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5) 신탁에서는 권리 자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체결, 대가수령, 침해에 대한 구제(이른바,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소송이 주목적인 경우 소위, "소송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등의 관리를 할 수 있으며(처분행위 불가), 관리에 따른 과실은 위탁자에게 이전된다. 또한 신탁관계 종료 시는 권리가 원래의 권리자에게 복귀한다.

글. 이호흥 /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

MANAGEMENT ON COMMISSION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규제

저작권위탁관리업 규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본에서의 당초의 기본취지는 저작물 이용자의 보호에 있었다.[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i)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토대가 확실해야 하며 또한, 그 운영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ii) 위탁관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위탁관리기관의 설립을 규제함과 동시에 각종 권리의 집중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대한 권능에 대하여 그 행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iii) 각종 권리자의 보호와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실한 위탁관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7]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누어지는 실제의 규제에서 전자는 i) 업무실시에 대한 허가주의, ii) 수수료의 승인주의, iii) 사용료규정에 대한 인가주의, iv) 감독청의 보고요구 및 명령, v) 업무운영의 감독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i) 업무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 ii) 허가의 취소, iii) 벌칙 등의 법적 규제를 들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 법적 규율의 경과

1986년 저작권법에서 처음 신설된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는 그간 근간적 내용의 변동은 없었으나, 부분적인 몇 차례의 개정 경과를 거쳤다. 처음의 주요한 개정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제 전환이었다. 당초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동일하게 허가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94년 정부의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신고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다음 주요한 개정은 저작권대리중개업과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던 것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이른바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 제외하는 개정을 들 수 있다.

이후 2006년 전문개정 저작권법(이하 "2006년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26호)고 하였다. 종전법 제2조 제19호가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하여 포괄적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6년 저작권법에서는 사실상의 신탁에 가깝다고 보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한 것이다.[8]

2006년 저작권법이 종전법과 달라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요건, 수수료,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먼저, 그 요건은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동법 제105조 제2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신설되었다(동법 제105조 제6항 및 제8항).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동법 제107조). 그 외에 신탁관리업자의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하였다(동법 제111조).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신탁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도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다음 주목할만한 개정으로는 2019년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106조의 2가 "이용허락의 거부금지"라는 표제하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체약강제 규정"이라 불리는 것으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겨진 과제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에서 종전부터 지적되어온 기반적 과제의 하나는 경쟁체제의 도입 문제다. 여기에는 저작자의 권익화보를 최대화하려면 자유경쟁을 통한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초연결·초지능 사회에서의 다종다양하고 대규모적인 저작물 창작과 이용환경에서 집중관리의 고도화·전문화·투명화의 추구는 필연적인바, 자유경쟁 체제의 문제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명확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 구분의 모호성 문제, 신탁재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문제 등을 들 수 있다.

6) 이는 일본에서 프라게 선풍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개업무법이 제정되었던 때문이다. 이에 관한 상세는, 尾中普子 · 久ヶ溱伸一 · 千野直邦 · 清水幸雄, 「著作權法」, 全訂版(學陽書房, 1990), 106面 참조.

7)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하)」(저작권아카데미, 2000), 198-199면.

8) 포괄적 대리행위는 신탁관리업과 유사한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는 이를 단순히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어 신탁업인지에 대해 해석상 의견이 분분하였다. 개정법은 포괄적 대리행위 자체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명문화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적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중개업자는 해석의 여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전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다[심동섭,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제76호(2006. 겨울), 50면].

글·그림. 이우영 작가

눈물이 난다!

본래부터 눈물이 많았다.

분명 슬프지 않은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크면 나아지겠지.

혀를 차시며 어른들이 그러셨었다.

그런데, 아니다.

하지만

명분 있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요즘이다.

기획: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NFT 열풍, 미래의 미술저작권을 말하다

미술저작권 저작권 보호 교육 및 공동 세미나

지난 8월 30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미술 저작권 보호 교육 및 공동 세미나'가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술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술품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를 알리고, 미술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NFT 미술품의 저작권 보호가 갖는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NFT 아트 플랫폼의 저작권 관련 책임과 역할, 추급권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미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게임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다

불법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 개최

게임 콘텐츠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사설서버나 오토 핵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이 건전한 게임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게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게임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불법 게임 및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했다. 그리고 9월 21일, '불법 게임과 게임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직접 만든 안내서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기관별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했다. 게임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는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정부 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 위한 정보 교류의 장 마련

한국-필리핀 국제공조 세미나

지난 9월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필리핀 정부 기관(법무부, 국가범죄수사국, 지식재산청, 국가통신위원회)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진행했다. 필리핀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과 한국의 링크사이트·EVPAD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뒤이어 9월 7일 진행한 보호원 방문 행사에서는 본원 업무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소개하며,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수사 지원에 대해서도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콘텐츠 집결지에서 저작권 보호를 외치다

광주 ACE Fair에서 저작권 보호 홍보·컨설팅 진행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제 문화콘텐츠 전시회 광주 ACE Fair에 참여해 부스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시에는 방송, 애니메이션·캐릭터, AI, 메타버스 VR/AR 게임 등 문화콘텐츠 관련 398개 기업(35개국)이 참여했다.

이날 보호원은 행사에 참관한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컨설팅 사업, 해외 저작권 이용권 사업, 저작권안심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컨설팅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부스에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참여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로서 저작권 관리 및 보호와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저작권 정보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유튜브 채널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미래 창작자인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보호원 마스코트 '바로'를 활용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영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KCOPA NEWS

저작권 보호 소식을 전합니다.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배포 바로 신고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뮤지컬 협단체와 연말까지 집중신고·공동캠페인 진행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뮤지컬 공연 무단 촬영물의 불법 유통 근절과 저작권 침해 현황 파악을 위해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뮤지컬 밀녹 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원과 (사)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이종규, 이하 협회),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회장 신춘수, 이하 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이하 캠페인)>의 일환이다.

신고대상은 뮤지컬을 무단 촬영·녹음한 파일과 뮤지컬 실황·중계 영상 및 공식 OST·DVD를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교환·판매하는 행위다. 신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대국민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https://www.copy112.or.kr)와 캠페인 TF(sos_musical@kmusical.kr)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원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호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양 협회와 함께 뮤지컬 관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뮤지컬 단체를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캠페인 홍보 영상 역시 다양한 홍보채널에 게재될 예정으로 보호원과 협회의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공연이 늘어나자 이를 악용한 불법복제물 거래가 증가해 뮤지컬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뮤지컬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호원과 양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뮤지컬 저작권 보호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게임 저작권 침해한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 폐쇄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불법 게임 유통 대응 기반 마련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태국의 사설 서버 2개를 폐쇄했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국내 게임회사인 '제페토'사의 불법 게임 서버 관련 피해구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보호원 태국사무소를 통해 태국 지식재산국에 사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페토'사는 '포인트 블랭크', '배틀 카니발' 등의 게임을 제작한 국내 개발사로, 해외 현지 서비스 운영 초기부터 불법 사설 서버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조치 등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나 태국 내 게임 IP 대응 사례가 적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보호원은 불법 서버 4개를 확인하고 '제페토'사의 소 제기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불법 사설 서버 2개의 폐쇄를 확인하고 나머지 2개 서버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게임 저작물의 해외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성과일 뿐 아니라, 추후 침해 대응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호원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한류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태국 내 불법 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원과 문체부는 현지 불법 사설 게임 서버 등 유사 침해 사례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태국 지식재산국, 경제범죄억제경찰(Economic Crimes Suppression, ECD), 법원 등 태국 정부 기관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9월 29일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처리절차 전면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 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 심의 기간 1주로 단축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 9월 29일(목)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정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총 664,400건의 불법복제물 삭제 및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심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정과제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와 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한류(케이) 콘텐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개인 창작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전문 컨설턴트가
여러분의 **저작권 보호 법률 상담**을 돕겠습니다.

부산 G-STAR 에서 만나요~

일자 2022. 11. 17.(목) ~ 20.(일)
장소 BEXCO(C10번 부스)

찾아가는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침해예방 컨설팅	• 저작권 보호 침해예방 자문 • 맞춤형 저작권 보호 교육 및 가이드라인 제공
침해구제 컨설팅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 안내 • 침해 사례별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서류 검토

신청 문의 : consulting@kcopa.or.kr ☎ 1588-0190(내선 5번)

2022년 제10회 SW산업보호대상 개최

디지털 전환과 소프트웨어 투자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SW산업보호대상을 개최합니다.

선정 대상

기관·기업	체계적인 SW 자산관리를 통하여 정품 SW 이용 환경을 촉진하고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
개인	SW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통해 SW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스타트업 (특별상)	정품 SW 사용 증대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SW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스타트업 기업

일시	2022. 11. 30.(수)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포상내역	부문	수량
국무총리상	기업·기관 or 개인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8
행정안전부 장관상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8
디지털타임스 사장상	기업·기관, 개인, 스타트업	5

자세한 내용은 '제10회 SW산업보호대상' 홈페이지(www.sweeper.or.kr/swipa/)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보호로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근원이자
군사력과 부(富)보다 중요한 한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사명감으로
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